

군산시 공고 제2020-712호

「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『행정절차법』 제41조와 『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3월 27일

군 산 시 장

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1. 폐지이유

코로나19 경기침체 대응 등 국가의 긴급한 재난·재해 상황시 시 자체 지원 확대를 통한 군산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향상 기여를 위해 「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존속 이유가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폐지

3. 폐지규칙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 : 복지정책과)에게 제출하여

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 복지지원계(☎063-454-308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입법예고사항에 관한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, 전자우편 등

다. 의견 제출장소

- 주 소 : (54078) 군산시 시청로 17(군산시청) 3층 복지정책과
- 전 화 : 063-454-3082
- 팩 스 : 063-454-3089
- 전자우편 : pinkish12@korea.kr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○ 성 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 (연락이 가능한 휴대폰, 자택, 사무실 등)

규칙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참고 >

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(제정) 2014.03.17 규칙 제548호
(일부개정) 2014.08.11 규칙 제565호
(일부개정) 2015.10.08 규칙 제59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(이하 "조례" 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지원대상자는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·사고·실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-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.
- 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이고 재산가액이 8,500만원 이하인 자 <개정 2014.08.11, 2015.10.08>
- 3. <삭제 2015.10.08>
- 4. <삭제 2015.10.08>
- ②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래시설의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는 소득·재산 및 금융 재산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1.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
 - 2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 중인 시설.

제3조(지원내용) ①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.

- 1. 긴급구호비
 - 가. 생계비: 주소득원의 장기 실직 및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자 중 1인~2인가구 200천원, 3인 이상 가구 300천원 범위 내.
 - 나. 의료비: 질병·부상 등으로 최근 3월간 본인부담진료비 및 의료비 관련 비용이 100천원이상 발생할 경우 300천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.
- 2. 교육비 및 교육에 필요한 관련 경비
 - 가. 수업료·입학금·학교운영비: 중·고등학교 재학생 중 고지서 납입 금액 중 300천원 범위 내에서 납입고지 금액.
 - 나. 교복비: 중·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전입학생 중 300천원 범위 내.
 - 다. 수하여행비: 초·중·고 재학생 중 초등 100천원, 중등 200천원, 고등학교 300천원 범위 내.
 - 라. 검정고시 등록금: 검정고시 등록 고지서 납입금액 중 300천원 범위 내 납입고지 금액.
 - 마. 학원교육비: 초·중·고 재학생 중 예·체능 및 보습학과 중 1과목에 한하며, 학생 본인부담금(10%), 학원 후원금(40%) 납부를 원칙으로 학원 연합회 평균 고지금액을 매월 지원하되 별도의 사업 계획에 의거 시행.
- 3. 공공요금: 수도, 가스, 전기, 건보료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자로 300천원 범위 내에서 체납 고지 금액.
- 4. 월동대책비: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중 동절기(12월,1월,2월) 재택 보호가 요구되는 가구로 300천원 범위 내.
- 5. <삭제 2014.08.11>
- 6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가.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에 대한 검사비, 약값, 의료 보장구 구입 및 대여, 요양급여, 임대보증금, 체납 월세,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수선, 장례비용, 조산 및 분만 후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,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자에 대하여 300천원 범위 내.
 - 나. 지원금은 시장이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이 어려울 경

우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입금하여 지원하거나 또는 물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한다.

제4조(지원의신청) ① 조례제7조에 의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[별지제1호서식]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거주지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<삭제 2014.08.11>

제5조(결정및통지) 시장은 지원신청대상자를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사항 및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의중지)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.

- 1. 지원대상자의 소득·재산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
- 2.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

제7조(대상자 관리)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[별지제3호서식]의 지원대상자 지원명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준용과정)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 (2014.03.17 규칙 제548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4.08.11 규칙 제565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10.08 규칙 제592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군산시 공고 제2020-731호

공 고

「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3월 27일

군 산 시 장

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수도계량기 동파시 교체비용 수용가 감면사항 명확히 하고자 함
-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과 다자녀가정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제11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 1항4호 수정
 - “노후 계량기” ⇒ “노후 및 동파계량기”
- 제34조(요금 등의 감면) 제1항4호를 7호로 변경
- 제34조(요금 등의 감면) 제1항4호 신설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- 제34조(요금 등의 감면) 제1항5호 신설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제34조(요금 등의 감면) 제1항6호 신설
-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
(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
3. 의견 제출

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9일까지 군산시장(참조 : 수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- 2)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 또는 팩스, 직접방문 등

- 1) 주소 : 군산시 시청로 17(조촌동, 군산시청), 2층 수도과
- 2) 팩스 : 063-454-5349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수도과(전화 : 063-454-536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4호중 “노후 계량기” 를 “노후 및 동파계량기” 로 한다.

제34조제1항 “제4호” 를 “제7호” 로 변경한다.

제3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제3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- 6.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
(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
제43조 “과태료, 기타” 를 “기타” 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 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</p>	<p>제11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노후 및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</u></p>
<p>제34조(요금등의 감면) 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제34조(요금등의 감면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</p> <p>5. 「<u>장애인복지법</u>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/p> <p>6. <u>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(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</u></p> <p>7.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
<p>제43조(지방세 징수의 준용) 이 조례에 따른 <u>요금, 수수료, 과태료, 기타</u>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</p>	<p>제43조(지방세 징수의 준용) ----- -----<u>요금, 수수료, 기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군산시 공고 제2020-732호

공 고

「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3월 27일

군 산 시 장

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『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』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예측 불가능한 각종 긴급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치법규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34조(요금 등의 감면) 제1항제4호에서 제6호까지 신설된 감면대상의 감면을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조문 개정 (안 제37조)
- 조례 제34조(요금 등의 감면)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 개정 (안 제37조)

3. 의견 제출

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9일까지 군산시장(참조 : 수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- 2)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 또는 팩스, 직접방문 등

- 1) 주소 : 군산시 시청로 17(조촌동, 군산시청), 2층 수도과

- 2) 팩스 : 063-454-5349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수도과(전화 : 063-454-536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 “제4호” 를 “제5호” 로 변경하고 제5호에서 조례 제34조제1항 제4호를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로 수정하며 “다”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그 밖에 재난재해 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.

제37조제1항 “제5호” 를 “제6호” 로 변경하고 제6호에서 조례 제34조제1항 제4호를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로 한다.

제3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감면대상자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㎥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르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.

가. 요금 감면은 신청 다음달 부과분부터 적용하며, 별지 제21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㎥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.

다.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제6호까지 감면대상자의 수도요금은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.

제37조제2항 “제4호” 를 “제5호” 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(생 략) 1. ~ 3. (생 략) 4.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“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”란 다음과 같다 가. ~ 나. (생략)</p>	<p>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 (현행 제1 항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제6 호까지의 감면대상자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m³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르며감면된 사 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.</u> 가. <u>요금 감면은 신청 다음달 부과분부터 적용하며, 별지 제21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</u> 나. <u>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m³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.</u> 다. <u>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제6호까지 감면대상자의 수도 요금은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.</u> 5.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“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”란 다음과 같다.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그 밖에 재난재해 또는 기타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5.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“기타 시장이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는 다음과 같다.</p> 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4호의 감면적용은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확보하는 일반회계 예산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p>	<p><u>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 <p>6. -----<u>제7호</u>에서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<u>제5호</u>의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군산시 공고 제2020-734호

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27일

군 산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인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』이 일부 개정 (대통령 제30325호, 2020. 1. 7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(안 제6조)

1. 시행령에서 기금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
 -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,
2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 함.
 - 재난취약계층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 등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청(참조 : 안전총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

- 우편/방문 : (54078)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(조촌동)
-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(전화 063-454-3842, FAX : 063-454-3829)
- 전자우편 : cho08040@korea.kr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·전자우편 등

4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안전총괄과 (063-454-384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: 붙임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명 :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

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기금의 용도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군산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 - 가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. 다만,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
2. 군산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
 - 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
 - 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
 - 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·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 - 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 제3항,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과 같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</p> <p>가.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교육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</p> <p>나.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·보강다. 풍수해, 설해,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</p> <p>라. 재난복구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·자재의 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</p> <p>마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</p> <p>2. 법 제 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설(군산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의 보수·보강</p> <p>3.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다음</p>	<p>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,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p>1. 군산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</p> <p>가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</p> <p>나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. 다만,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</p> <p>2. 군산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.</p> <p>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</p>

각 목의 시설에 대한 보수·보강

가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·호안·보 및 수문

나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 저수지, 양수장,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, 배수장, 취입보, 용수로, 배수로, 유지, 방조제 및 제방

다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·제설시설, 토사유출·낙석 방지 시설, 공동구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·

교량·지하도 및 육교

라.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
4. 법 제 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·운영

5. 재난피해시설(군산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)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한조치

에 대한 안전조치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

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·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
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산시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

가. 수해·강풍 등 피해시설
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

나.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
장비의 임차·구입 등

다. 상습가뭄재해지역 임시
용수확보 대책사업

6.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
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
응급복구

7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
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
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
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
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

8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
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
가.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
집, 항공사진 측량

나. 풍수해저감계획, 비상대
처계획(EAP)수립, 재해복구
사업 분석평가

다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
사

9.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
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
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군산시 고시 제2020 - 46호

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고시

『도로교통법』 제12조 및 『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』 제3조에 의거 노인 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.

2020. 3. 24.

군 산 시 장



1. 고시 내용

시 설 명	주 소	지정 구간	비 고
숲속유치원	군산시 계산2길 10-7	유치원 앞 인접도로 L=553m	신규
평안어린이집	군산시 축동3길 14-4	어린이집 앞 인접도로 L=140m	확대

2. 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

○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(☎063-454-3813)

3. 위치도 및 구간 : 붙임참조

【 붙임 1 】

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위치

■ 시설명 : 숲속유치원 / 군산시 계산2길 10-7 / 인접도로 553m



■ 시설명 : 평안어린이집 / 군산시 축동3길 14-4 / 인접도로 140m



군산시 공고 제2020 - 690호

군산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16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

군산시 지곡동 393-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16호선)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·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군 산 시 장
2020년 3월 일

- 1. 열람 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- 2. 열람 장소 : 군산시청 도시계획과
- 3. 사업의 개요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군산시 지곡동 393-1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
- 2) 명 칭 : 중로2-16호선 도로개설공사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

- 1) 중로2-16 : L=660m, B=15m
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- 1) 사업시행자 주소
 -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(조촌동, 군산시청)
- 2) 사업시행자 성명 : 군산시장(도시계획과)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 ~ 2025. 12. 30.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: 붙임참고

- 4.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(☎ 063-454-3523, 35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

순번	위치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리자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내용	
1	군산시 지곡동	418-10	전	582	82	군산시					
2	"	393	대	664	274	유한회사와* 업	군산시 소룡동 1565-6				
3	"	393-1	대	201	201	정*미	군산시 계산2길 92(지곡동)	군산** 협동조합	군산시 번영로 162(조촌동)	근저당, 지상권	
4	"	392-1	대	314	314	군산시					
5	"	390	전	383	114	최*현	군산시 서흥남동 418-22				
6	"	산139	임	1,587	674	서*희	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1331 두산아파트 109동 203호				
7	"	391	전	873	844	이*진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163, 486동 2806호(경서동, 청사29블록 호반베르디움)				지분 1/5
						이*희	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9길 31, 411동 1304호(중계동, 목화아파트)				지분 1/5
						이*자	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615번길 34, 112동 803호(유천동, 현대아파트)				지분 1/5
						이*홍	군산시 축동로 10, 104동 305호(수송동, 동신아파트)				지분 1/5
						이*춘	군산시 미장안길 55, 203동 1302호(미장동, 파인빌2차아파트)				지분 1/5
8	"	산137-1	임	2,380	186	김*정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65, 5411동 2601호(이의동, 자연앤힐스테이트아파트)	군산** 농업협동 조합	군산시 수송동 24-13(지곡지점)	근저당, 지상권	
9	"	산140-1 3	임	661	593	박*철	군산시 미룡로 63, 102동 802호(미룡동, 은파롯데인벤스가아파)	주식회사 **은행	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-2	근저당, 지상권	
10	"	산140	임	198	198	배*희	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53, 103동 1102호(성주동, 프리빌리지아파트)				
11	"	산135-6	임	232	232	박*자	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2-7 현대아파트 2-401				지분 50/232
						이*신	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396-16 대옥아파트 다-402				지분 83/232
						박*진	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22-2 태평양사택-102				지분 33/232
						이*근	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10, 5동 101호 (복수동, 계룡아파트)				지분 66/232
12	"	산135-5	임	198	186	손*숙	대전광역시 동구 관암동 398 셋별연립주택 비-202				지분 33/198
						송*희	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62-202				지분 66/198
						김*자	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23 반석마을8단지 아파트 802-1304				지분 66/198
						김*수	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542 송림마을 4단지 405-405				지분 33/198
13	"	산135-4	임	165	165	한*순	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55-3(소계동)				지분 66/165
						권*진	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10-13				지분 50/165

순번	위치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리자			비고	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내용		
						김*숙	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396-16 대옥아파트 다-402				지분 49/165	
14	"	산135-3	임	165	165	조*결	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492	군산 **조합	군산시 조촌동 841-13	근저당		
15	"	산135-2	임	231	231	신*숙	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44 남산타운아파트 26-309					
16	"	산140-9	임	264	36	김*미	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2-5 세종아파트 102동 1203호					
17	"	산140-7	임	165	165	강*철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9-11				지분 1/2	
						신*숙	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5-1802				지분 1/2	
18	"	산140-6	임	264	264	남*광	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21, 204호(갈마동, 썬빌리지)	옥구** 협동조합	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37	근저당, 지상권		
19	"	산140-8	임	231	21	유*선	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93번길 46, 301호(선화동, 다가구주택)					지분 99/231
						연*자	대전광역시 서구 도마6길 190 (도마동)					지분 33/231
						정*순	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394 샘물타운 308동 1306호					지분 33/231
						박*경	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83번길 38, 108동 1901호(장대동, 월드컵패밀리타운)					지분 66/231
20	"	산140-5	임	165	165	허*원	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82 한일유엔아이아파트 101동 1201호					
21	"	산140-4	임	198	198	서*자	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0-2 삼호아파트 2동 1505호					
22	"	산144-8	임	460	3	김*분	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1287번길50-15, 301호(낭월동)					지분 66/460
						이*욱	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, 108동 601호(만년동, 초원아파트)					지분 33/460
						최*미	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87, 104동 204호(관저동, 원앙마을)					지분 29/460
						우*순	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162번길 23, 101동 505호(대흥동, 2차현대아파트)					지분 33/460
						김*경	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문화로 13					지분 66/460
						정*금	대전광역시 동구 마을회관2길 56(신흥동)					지분 34/460
						진*자	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48, 701동 204호(관저동, 구봉마을)					지분 40/460
						정*덕	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75, 상가동 201호(대사동, 대자연아파트)					지분 34/460
						유*예	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2길 4-26	옥천** 신용협동 조합	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65	근저당	지분 33/460	
						라*만	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, 108동 601호(만년동,					지분 92/460

순번	위치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리자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내용	
							초원(아파트)				
23		산144-1	임	198	61	유*희	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394, 3동 1302호(비래동, 현대아파트)	군산** 조합	군산시 조촌동 841-13	근저당, 지상권	
24		산142-2	임	1,587	407	채*량	군산시 경암동 660-7				
25		산135-1	임	331	331	강*미	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31 현대아파트 101-1503				
26		산133	임	4,165	797	박*순	군산시 지곡동 522	육구** 협동조합	군산시 육구읍 육구로 37	근저당	지분 1/2
						방*형	군산시 칠성7길 56, 101동 601호(산북동, 하나리움시티)				지분 1/8
						김*금	군산시 신창안길 49(산북동)				지분 1/8
						이*옥	군산시 공항로 242(산북동)				지분 1/8
						윤*은	군산시 용둔길 12, 108동 1505호(미룡동, 금광베네스타)				지분 1/8
27		산140-3	임	330	330	문*숙	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4 맑은아침아파트 109-1901				지분 33/330
						정*기	충남 아산시 권곡동 607 주공아파트 104-207				지분 66/330
						이*순	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708(조촌동)				지분 33/330
						김*례	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729번길 46-11(용두동)				지분 66/330
						박*길	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190-1 시영아파트 5동 306호				지분 33/330
						박*희	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 116, 102동 601호(배방자이2차북수마을)				지분 33/330
						엄*영	경북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-3, 203동 515호(옥동, 주공1아파트)				지분 33/330
						김*식	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26번길 29, 102동 1102호(중촌동, 현대아파트)				지분 33/330
28		87-1	전	235	225	고*옥	서울 구로구 온수동 45-32 성원빌라 6동 202호				
29		산131	임	298	298	박*국	군산시 구암동 159				
30		산130	임	3,273	1,577	진주강씨호**공파도대공종중 강*수	군산시 육구읍 상평리 299				
31		산129-4	임	793	145	이*희	군산시 경암동 609-138				
32		산129-1	임	1,488	568	박*길	군산시 미원동 236				
33		산128	임	99	17	김*숙	구읍면 옥정리				사정
34		산126	임	3,174	2,348	최*성	육구군 미면 산북리 423				지분 1/4
						최*길	군산시 산북동 437				지분 1/4
						최*윤	인천시 남구 주안동 1423-10				지분 1/4
						최*섭	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64번길 34, 202호(고강동, 동남빌라)				지분 1/4
35		산127	임	1,686	988	김*수	군산시 동지곡길 53, 102동 803호(지곡동, 은파코아루아파트)				

순번	위치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리자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내용	
36		산123	임	694	37	진주강씨호**공 파도대공중중 강*수	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299				
37		산124	임	496	373	문*수	군산시 사정동 249				
38		산125	임	2,398	127	김*재	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7푸른마을 610동 1601호				지분 670/239 8
						김*인	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45 오성온하이파트 1동 305호				지분 1058/23 98
						오*용	서울 금천구 시흥동 907-4				지분 670/239 8
39		산122-3	임	3,123	1,252	김*옥	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중촌1길 5, 202호(다산동, 송학아트빌라)	군산** 농업협동 조합	군산시 수송동 24-13	근저당, 지상권	
40		347-6	묘	165	30	국(기획재정부)					
41		347-5	전	383	383	국(기획재정부)					
42		347-7	전	1,626	152	국(기획재정부)					
43		347	전	1,405	86	한*웅	군산시 지곡동 70				
44		346	답	182	43	강*문	군산시 지곡동 143				
45		345	유	248	39	국(농수산부)					
46		347-3	전	360	19	최*단	군산시 월명로 501(월명동)	농협** 주식회사	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(충정로1가)	근저당	
47		347-1	전	73	73	국(기획재정부)					
48		347-2	제	33	33	국(농수산부)					
49		97-2	전	430	7	김*진	충남 논산시 은진면 탑정로 530-23	옥구** 협동조합	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37	근저당, 지상권	
50		97-1	전	284	42	이*환	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422-7 버드내마을아파트 123동 1903호				
51		97-5	유	116	116	국(농수산부)					
52		97-4	제	145	145	국(농수산부)					
53		123-2	제	852	852	국(농수산부)					
54		339-4	답	199	75	유*동	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97번길 431, 268동 203호(추목동, 공대아파트)				지분 34/199
						이*식	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435(비래동)				지분 66/199
						육*자	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326번길 37, 에이동 301호(갈마동, 공신빌라)				지분 99/199
55		123-1	답	1,775	190	이*경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11, 104동 1804호(안양동, 삼성 래미안아파트)	주식회사 **은행	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-2	근저당, 지상권	
						박*영 (가등기권자)	군산시 문화로 208-8, 104동 501호(미장동, 파인빌아파트)				
56		338-1	답	198	198	강*구	군산시 옥산면 남대로 105				
57		337-1	답	410	328	고*영	군산시 미장13길 33, 108동 2305호(미장동, 제일풍경채아파트)	주식회사 **은행	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(금암동)	근저당, 지상권	지분 1/4
						홍*화	군산시 미장13길 33, 108동 2305호(미장동, 제일풍경채아파트)				지분 1/4

순번	위치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리자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내용	
						고*호	군산시 미장13길 33, 108동 2305호(미장동, 제일풍경채아파트)				지분 1/4
						고*민	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115-1, 510호(마곡동, 마곡헤리움1차)				지분 1/4
58		336-1	답	340	287	고*영	군산시 미장13길 33, 108동 2305호(미장동, 제일풍경채아파트)	주식회사 **은행	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(금암동)	근저당, 지상권	지분 1/4
						홍*화	군산시 미장13길 33, 108동 2305호(미장동, 제일풍경채아파트)				지분 1/4
						고*호	군산시 미장13길 33, 108동 2305호(미장동, 제일풍경채아파트)				지분 1/4
						고*민	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115-1, 510호(마곡동, 마곡헤리움1차)				지분 1/4
59		336-2	제	162	162	김*향	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24-15 뉴월드빌라 101호				
60		334-2	제	17	17	국(농수산부)					
61		340	유	560	391	국(농림수산부)					
62		338-3	유	1,227	1,227	국(농수산부)					
63		337-3	유	347	347	국(농수산부)					
64		336-3	유	123	123	전라북도교육감					
65		334-3	전	45	45	전라북도교육감					
66		334	전	602	3	전라북도교육감					지분 552/602
						김*배	군산시 오룡동 832-44				지분 50/602
67		335	전	1,358	1,063	차*순	군산시 죽동로 42, 302동 1001호(수송동,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1단지)				
68		산92-2	임	230	230	전라북도교육감					
계		68필지			21,898						